

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(농업기술센터)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“2025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”이 1월 31일까지 신청·접수 기간이었으나,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연휴기간이 길어, 희망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·접수 기간을 2월 6일까지 연장합니다.

□ **건 명**: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기간 연장

□ **공고사업명**: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시범 등 26사업

□ **신청기간**: 2025년 1월 2일 부터 2월 6일 까지

* (당초) 1. 31.(금) 까지 → (변경) 2. 6.(목) 18:00까지

□ **신청자격**: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(단체) 및 법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(단체)

○ “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 제3조 및 “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” 제7조에 정한 단체와 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”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

□ **신청방법**

-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(법인)은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

※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사업만 신청 가능

※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사업은 소재지 상관없이 해당기관 직접 방문 신청 접수

- 원본서류를 동봉한 시범사업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

가능(접수마감일 소인 포함)

-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,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 함(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)

※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(붙임 참고): 사업별 추가 서류는 사업별 담당자 문의

< 접수 및 문의처 >

- 미래농업육성과: 064)760-7331~7333
 - 주소: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, 2층 미래농업육성과
 - 대표 이메일: gustn33@korea.kr
- 기술지원조정과: 064)760-7521~7524
 - 주소: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, 1층 기술지원조정과
 - 대표 이메일: wnsgh9024@korea.kr
- 제주농업기술센터: 064)760-7721~7722, 7751~7754, 7761~7763
 - 주소: 제주시 애월읍 상귀길 173
 - 대표 이메일: m930102r@korea.kr
- 서귀포농업기술센터: 064)760-7821~7825, 7851
 - 주소: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
 - 대표 이메일: hyg8756@korea.kr
- 동부농업기술센터: 064)760-7621~7624, 7641~7643
 - 주소: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166
 - 대표 이메일: wldn782@korea.kr
- 서부농업기술센터: 064)760-7921~7924, 7931~7932, 7951
 - 주소: 제주시 한림읍 월림 7길 90
 - 대표 이메일: hyojin6781@korea.kr
- 축산생명연구원: 064)710-7971~7974
 - 주소: 제주시 신비마을길 13
 - 대표 이메일: sjy0728@korea.kr

※ 이메일을 통해 제출시 반드시 제출 확인 필요(각부서 담당자)

< 신청서류 >

○ 기본서류

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농지대장(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), 지방세납세증명서,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

○ 추가서류

-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(신기술보급사업) *별표9
- 소득금액증명원,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)
- 졸업증명서(농과계학교 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
-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
-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(최근 3년간), 농업인상 수상 사본
(농업기술원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귤대학 등)

※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같음. 여기서,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

< 사업대상 제외자 >

○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(단,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)

○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(단,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)

○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(시범사업자 통지)이후 포기하거나,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(배우자 포함).

○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시범사업 신청자 기준)

- 농협 상근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
-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

○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

※ 단,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

○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

○ 감귤분야사업: 신규 조성 감귤원 (다만,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)

□ 대상자 선정 기준

-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-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, 영농법인, 생산자단체,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
 -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
-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,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
 -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 (단,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)
-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
-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, 선정기준 이행
-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
-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수료증(신기술보급사업)의 경우 현지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

< 별표 1 >

시범사업 신청서

사 업 명					신청 면적	㎡
신 청 자	생 산 자 단 체 명	(단체인 경우 기재)				
	성 명 (대표자)	생년월일		자택번호		휴 대 폰
	배 우 자	생년월일		자택번호		휴 대 폰
	도로명주소	(기존주소 :)				
	영농경력	년	최종학력		단체활동	
	작 목			재배면적		
신 청 내 용	사업예정지 지번	읍·면·동		리 번지	사업예정지 면 적	㎡
	사 업 비 (천원)	계		보 조	자 담	
<p>본인은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·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 <p>붙임 사업계획서 1부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. 2025년 월 일 신 청 자 : (인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</p>						
<p>※ 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농지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- 추가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,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관련사업) 졸업증명서(농과계 학교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, 영농승계확인서(필요시), 교육이수확인서(농업기술원(센터)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골대학, 농협), 농입연상 수상 사본(농촌진흥청, 농업기술원) 						

< 별표 2 >

농업인단체 임원(품목별연구회) 활동 경력확인서

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. . .
	주소			
단체 활동 사항	농업인단체 (품목별연구회)	직책	활동기간	비고
			~	
			~	
			~	
			~	
			~	

※ 비고 : 중앙, 도, 시, 읍면동, 마을 단위 사항 기재

※ 경력인정 사항 : 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농업인단체, 품목별연구회에 한하며, 사설단체는 인정 불가

위와 같이 농업인단체(품목별연구회)활동 경력사항을 제출함.

2025. . .

확인자 : 직 성명 (인)

발급기관 : (직인)

< 별표 3 >

시범사업 현지심사표(안)

사업신청자

성 명	주 소	소재지	신청면적	작 목
			m ²	

공통항목 : 40점

조사항목	조 사 내 용	배 점	점수	확 인 내 용
보조사업 수혜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년간 시범사업 수혜여부 - 미 수혜(20), 5백만원 미만(15), 10백만원 미만(10), 15백만원 미만(7), 20백만원 미만(5) 	20		시범사업 선정대상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심사 배제
사업예정지 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접근성 및 과급효과 - 왕복차선 대도로변(4) - 농로변(2) - 기타(1) 	4		
영농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- 경영체 등록 5년이상(3) - 경영체 등록 3~4년(2) - 경영체 등록 1~2년(1) 	3		
토지소재지 및 소유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내 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(5) - 본인 또는 배우자(5), 임차등기(3), 직계존속(1) ○ 관외농업인 중 관내 토지소유(3) - 본인 또는 배우자(3), 임차등기(1) 	5		
농업전문 기술습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3년간 전문교육 수료 - 100시간 이상 5점 (시간 × 0.05점 부여) ※ 사이버교육의 경우 50% 인정하되, 실시간 교육일 경우 증빙여부에 따라 100%인정 ※ 농촌진흥기관 및 농촌진흥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관(농업마이스터, 치유농업), 농업교육포털, 농협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	5		제출실적에 대해 최대 5점까지 인정
농업인단체 활동 참여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 실적 - 중앙(3), 도·시(2), 읍면(1) ※ 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○ 품목별연구회 임원(1) ○ 강소농자율모임체 임원(1) 	3		최근 5년간 임원 활동 실적 인정
소계		40		

□ 사업별 별도항목 : 60점(시범사업 성격에 맞게 항목 설정)

조사항목	조 사 내 용	배 점	점수	확 인 내 용
시범작목 기술력	○ 시범작목 재배 여부 - 15년 이상(15), 10년이상(10), 5년이상(7)	15		
	○ 작목 기술력 - 매우높음(10), 보통(5), 낮음(3)	10		
포장상태	○ 토양조성 및 재배적지 정도 - 매우우수(15), 우수(10), 보통(7) 미흡(3)	15		
기반시설	○ 과학영농 기반조성 - 전기, 관수 시설(10) - 1가지 시설(7) - 시설 안 됨(4)	10		
사업추진력	○ 후계농업인 유무(3) ○ 농업후계인력 유무(2)	5		
농정시책 참여도	○ 농정시책 참여도 및 협력도 - 높음(5), 보통(3)	5		관측조사, 소득조사, 생육조사, 병해충조사 등 포장 제공농가 중 2건 이상 5점, 2건 미만 3점
소계		60		
합 계		100		

□ 농업활동 가점: 최대 5점

조사항목	조 사 내 용	배 점	점수	확 인 내 용
가점	○ 농업관련 수상(최근 5년 이내) - 농업활동 유공경진: 국무총리 이상(2), 도지사 이상(1) - 4-H대상, 감귤품평회 수상(1) ○ 청년농업인(2) ※ 제주 청년농업인육성 조례 기준 ○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관련 학교 졸업(1) ○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자('24~'26)(1)	5		

□ 조사자 의견



※ 농가별 현지조사 관련 자료 별지 첨부 (도로사진, 기반시설, 경력확인서, 교육수료증 등)

2025. . .

조 사 자 직 : 성명 : (인)

직 : 성명 : (인)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

< 별표 4 >

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

동의자 인적사항

사업자(단체)		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	
대표자(성명)		전화번호	
신청사업명			

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
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

2025. . .

동 의 자 :

(날인,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

[별표 5]

영농승계확인서

영농기반 확보실적(계획 포함)

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

지번	지목	면적	확보전 소유자(관계)	확보일정	확보형태

시설물

지번	시설물명	면적	확보전 소유자(관계)	확보일정	확보형태

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_____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 : 2025년 _____월 _____일

신청자 : _____ (인)

확인자 : 주소 : _____ 관계 : 부 성명 : 김○○(인)

확인자 : 주소 : _____ 관계 : 형 성명 : 김○○(인)

확인자 : 주소 : _____ 관계 : 제 성명 : 김○○(인)

*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

작성 시 주의사항

* 본인 소유 분은 100%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,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%만 영농기반으로 인정

(단,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%는 영농승계(상속, 증여)가 이뤄져야 함)

* (예시)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.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,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.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어야함(나머지, 0.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)